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Ж

1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족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재	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기	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2년	2	덕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 기타지역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9.26.(목)	2024.10.08.(화)	2024.10.10.(목)	2024.10.11.(금)	2024.10.14.(월)	2024.10.18.(금)	2024.10.23.(수)~	2024.10.29.(화)~
	,	,	1 1 1 1 (1)	,	,	,	2024.10.27.(일)	2024.10.31.(목)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하거나, 계약체결 및 소유권 행사(의무거주기간, 처분제한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해외건설근로자 外)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기관추천 (해외건설근로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상, 지역별·면적별 예기	지금 충족	` '	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	Я		-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적용	-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9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9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 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0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dh-daechi.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0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0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9.26.(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2022.09.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T E	T 문 국일이답	해당지역	기타지역	글인당합 2판위	경염자르프	시뉴업구	계탁세르	
일 정	2024.10.08.(화)	2024.10.10.(목)	2024.10.10.(목) 2024.10.11.(금) 2024.10.14.(월)		2024.10.18.(금)	2024.10.23.(수)~ 2024.10.27.(일)	2024.10.29.(화)~ 2024.10.31.(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 ■ (현장접수) 청약통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8	양재동 225-6 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 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	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01.12-2.122.1.1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 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 : : : : : : : :	
구분	기간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거주의무기간	2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 ※ 전매 금지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4.10.18.)부터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법」제6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주택법」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 거주 의무 : 본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거주의무

기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 본 아파트는「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 ·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라도「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배우자에 한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LH등을 통해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동의를 받 | 아야 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거주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일부라도 양도하거나 배우자에게 주택의 전부를 증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후 배우자는 거주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거주의무는 해당 주택과 입주자(거주의무자)에게 동시 적용되므로 거주의무 이행 전까지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양도 행위 는 금지됩니다.
- ※「주택법」제57조의2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반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야하고, 위반한 거주의무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1 호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법」제57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주택법」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 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 14990호(2024.09.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지상16층, 8개동, 총 282세대 중 일반분양 72세대

[특별공급 35세대(일반[기관추천] 7세대, 다자녀가구 7세대, 신혼부부 13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죾	택공급면적(n	1²)	기타						특별공급	3 세대수	^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9900A	59A	59.9900	20.1259	80.1159	66.9620	147.0779	27.0828	21	2	2	4	1	2	11	10	3
		02	059.9900B	59B	59.9900	21.6559	81.6459	66.9620	148.6079	27.0828	4	-	-	1	-	-	1	3	-
		03	059.9900D	59D	59.9900	20.6259	80.6159	66.9620	147.5779	27.0828	3	-	1	-	-	-	1	2	-
		04	059.9000E	59E	59.9000	21.5358	81.4358	66.8616	148.2974	27.0422	4	-	-	1	-	-	1	3	-
				72TA	72.9900	22.6332	95.6232	81.4729	177.0961	32.9518									
				72TB	72.9900	22.7932	95.7832	81.4729	177.2561	32.9518									
				72TC	72.9900	23.9132	96.9032	81.4729	178.3761	32.9518									
민영	2024000547	05	072.9900T	72TD	72.9800	24.6610	97.6410	81.4617	179.1027	32.9472	7 1	1	1	-	1	4	3	3	
주택				72TE	72.9800	23.5110	96.4910	81.4617	177.9527	32.9472									
				72TF	72.9800	23.0110	95.9910	81.4617	177.4527	32.9472									
				72TG	72.9800	23.8710	96.8510	81.4617	178.3127	32.9472									
		06	084.9900B	84B	84.9900	25.9468	110.9368	94.8676	205.8044	38.3692	31	4	3	6	1	3	17	14	3
		07	0040005	94TE	94.9900	28.6832	123.6732	106.0298	229.7030	42.8838									
		07	094.9900T	94TF	94.9900	29.8332	124.8232	106.0298	230.8530	42.8838	2	-	-	-	-	-	-	2	-
						합 계					72	7	7	13	2	6	35	37	9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동일 주택형 중 동/라인별 위치가 상이한 주택형(072.9900T, 094.9900T)의 경우 특정타입(72TA, 72TB, 72TC, 72TD, 72TE, 72TF, 72TG / 94TE, 94TF) 선택 청약이 불가한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청약하시기 비 랍니다.
- ※ 주택형 072.9900T의 경우 세부 타입별로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 상이하며, 094.9900T의 경우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이 상이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 × 0.3025 또는 공급면적(m') ÷ 3.3058)
-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최저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涨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59A	59B	59D	59E	72T	84B	합 계
	국가유공자	1	-	-	-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1	1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1	1
기선구선 특별중합	장애인(서울특별시)	1	-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	-	-	-	-	1	1
	해외건설 근로자	-	-	-	-	-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50%)	1	-	1	-	1	2	5
나사녀기가 득필증합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	-	-	-	1	2
	신혼부부 특별공급	4	1	-	1	1	6	1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	-	-	1	2
	생애최초 특별공급	2	-	-	-	1	3	6
	합 계	11	1	1	1	4	17	3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역	백 및 1	납부일정														(단위:원)
							브이	:가격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주택형	타입	세대수	동별/라인별	층구분	세대수			· バミ		(20%)	1차(15%)	2차(15%)	3차(10%)	4차(10%)	5차(10%)	(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Э	계약시	2024.12.16	2025.01.16	2025.03.17	2025.04.16	2025.05.16	입주지정일
			106동 1호, 107동 2호, 108동 2, 3호	1층	4	938,593,440	622,606,560	_	1,561,200,000	312,240,000	234,180,000	234,180,000	156,120,000	156,120,000	156,120,000	312,240,000
			104동 1호, 105동 3호, 107동 1,2호	2층	4	948,513,240	629,186,760	-	1,577,700,000	315,540,000	236,655,000	236,655,000	157,770,000	157,770,000	157,770,000	315,540,000
059.9900A	59A	21	104동 1호, 106동 1호, 107동 1호, 108동2, 3호	3층	5	968,292,720	642,307,280	-	1,610,600,000	322,120,000	241,590,000	241,590,000	161,060,000	161,060,000	161,060,000	322,120,000
			105동 3호, 107동 1호	4층	2	978,152,400	648,847,600	-	1,627,000,000	325,400,000	244,050,000	244,050,000	162,700,000	162,700,000	162,700,000	325,400,000
			105동 3호 108동 2, 3, 5호	5~7층	6	988,012,080	655,387,920	-	1,643,400,000	328,680,000	246,510,000	246,510,000	164,340,000	164,340,000	164,340,000	328,680,000
			106동 2호	1층	1	929,214,720	616,385,280	-	1,545,600,000	309,120,000	231,840,000	231,840,000	154,560,000	154,560,000	154,560,000	309,120,000
059.9900B	59B	4	106동 2호	2층	1	939,014,280	622,885,720	_	1,561,900,000	312,380,000	234,285,000	234,285,000	156,190,000	156,190,000	156,190,000	312,380,000
			105동 5호, 106동 2호	5층	2	978,152,400	648,847,600	_	1,627,000,000	325,400,000	244,050,000	244,050,000	162,700,000	162,700,000	162,700,000	325,400,000
050 00000	59D	3	105동 5호	4층	1	968,352,840	642,347,160	_	1,610,700,000	322,140,000	241,605,000	241,605,000	161,070,000	161,070,000	161,070,000	322,140,000
059.9900D	390	3	105동 5호, 106동 2호	7층	2	978,152,400	648,847,600	_	1,627,000,000	325,400,000	244,050,000	244,050,000	162,700,000	162,700,000	162,700,000	325,400,000
059.9000E	59E		108동 1호	2층	1	948,513,240	629,186,760	-	1,577,700,000	315,540,000	236,655,000	236,655,000	157,770,000	157,770,000	157,770,000	315,540,000
059.9000E			108동 1호	5~7층	3	988,012,080	655,387,920	_	1,643,400,000	328,680,000	246,510,000	246,510,000	164,340,000	164,340,000	164,340,000	328,680,000
	72TA	1	107동 2호	T1층	1	1,150,275,960	763,024,040	_	1,913,300,000	382,660,000	286,995,000	286,995,000	191,330,000	191,330,000	191,330,000	382,660,000
	72TB	1	107동 2호	T2층	1	1,143,061,560	758,238,440	_	1,901,300,000	380,260,000	285,195,000	285,195,000	190,130,000	190,130,000	190,130,000	380,260,000
	72TC	1	107동 3호	T1층	1	1,140,175,800	756,324,200	_	1,896,500,000	379,300,000	284,475,000	284,475,000	189,650,000	189,650,000	189,650,000	379,300,000
072.9900T	72TD	1	107동 3호	T2층	1	1,140,115,680	756,284,320	_	1,896,400,000	379,280,000	284,460,000	284,460,000	189,640,000	189,640,000	189,640,000	379,280,000
	72TE	1	107동 5호	T1층	1	1,153,823,040	765,376,960	_	1,919,200,000	383,840,000	287,880,000	287,880,000	191,920,000	191,920,000	191,920,000	383,840,000
	72TF	1	107동 5호	T2층	1	1,146,668,760	760,631,240	-	1,907,300,000	381,460,000	286,095,000	286,095,000	190,730,000	190,730,000	190,730,000	381,460,000
	72TG	1	106동 1호	T1층	1	1,157,009,400	767,490,600	-	1,924,500,000	384,900,000	288,675,000	288,675,000	192,450,000	192,450,000	192,450,000	384,900,000
				1층	4	1,261,497,960	836,802,040	-	2,098,300,000	419,660,000	314,745,000	314,745,000	209,830,000	209,830,000	209,830,000	419,660,000
				2층	4	1,274,784,480	845,615,520	-	2,120,400,000	424,080,000	318,060,000	318,060,000	212,040,000	212,040,000	212,040,000	424,080,000
004 00000	0.45	0.1	101동 2,3호 102동 2,3호	3층	4	1,301,357,520	863,242,480	-	2,164,600,000	432,920,000	324,690,000	324,690,000	216,460,000	216,460,000	216,460,000	432,920,000
084.9900B	848	31	,,,,,	4층	4	1,314,583,920	872,016,080	-	2,186,600,000	437,320,000	327,990,000	327,990,000	218,660,000	218,660,000	218,660,000	437,320,000
				5~9층	14	1,327,870,440	880,829,560	-	2,208,700,000	441,740,000	331,305,000	331,305,000	220,870,000	220,870,000	220,870,000	441,740,000
			102동 2호	10층	1	1,341,156,960	889,643,040	-	2,230,800,000	446,160,000	334,620,000	334,620,000	223,080,000	223,080,000	223,080,000	446,160,000
004 00007	94TE	1	108동 1호	T2층	1	1,447,809,840	873,081,964	87,308,196	2,408,200,000	481,640,000	361,230,000	361,230,000	240,820,000	240,820,000	240,820,000	481,640,000
094.9900T	94TF	1	108동 2호	T2층	1	1,453,942,080	876,779,927	87,677,993	2,418,400,000	483,680,000	362,760,000	362,760,000	241,840,000	241,840,000	241,840,000	483,680,000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타입(072.9900T, 094.9900T)의 호수는 T101호는 7101호, T102호는 7102호, T103호는 7103호, T105호는 7105호, T201호는 7201호, T202호는 7202호, T203호는 7203호, T205호는 7205호로 안내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증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발코니를 비확장형으로 선택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시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에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 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약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 구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가 중복당 부부 외 세대원이 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제를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 경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집 창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집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집 청약통장 **청약통장**	임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 -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 도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점된 경우 ** 등복당첨된 경우 라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경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를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 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 양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역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 모두 부적격 차 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한다.) 하여야 합니다.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참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한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처리 대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공급기준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된 부부 외 세대원이 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제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 2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기관추천(하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 집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② 존택청약종합저축 · 존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된 경우 등복당첨된 경우 라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경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회에 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부부: 무주택세대주 요건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기 생각 부 시작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 된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모두 부적격 차 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하이야 합니다.	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처리 예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가 중복당 #부 외 세대원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제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호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② 정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된 경우 등복당첨된 경우 라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경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회에 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부부: 무주택세대주 요건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기 생각 부 시작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 한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 모두 부적격 차 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하이야 합니다.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처리 학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 외 세대원이 #부 외 세대원이 #부 외 세대원이 # #부 외 세대원이 # #부 외 세대원이 # # # # # # # # # # # # # # # # # # #	※ 부 등복당첨된 경우 부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경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를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투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 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모두 부적격 차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함이야 합니다.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대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전투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② 조태청약조합저축 · 즈태청약조합저축에 가입하여	가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경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의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기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병	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하야 합니다.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세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를 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 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하여야 합니다.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구구역 요건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제외) / 다자녀가구 / 신혼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② 조태청약조합저축· 즈태청약조합저축에 가입하여	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 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어야 합니다.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 기관추천(해외건설 근로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 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팀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5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특별공급 입하여 2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mark></mark> 2 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	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_	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모든면적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세대

구분	내용								
TE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한 분 ■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이신 분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해외건설 근로자 : 해외건설협회 해외지원팀							
당첨자 선정방법	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4-2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7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대상자 │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령 이상(태아, 입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사에게 등급함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당첨자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②배점	공급에서 낙첨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당첨자 선정방법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 ②배점	공급에서 낙첨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배점기준 기준	사시 경쟁하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경 ■ ②배점 배점항목	종급에서 낙첨· 총배점 100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배점기준 기준 4명 이상	N 경쟁하 점수 40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비고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등 ■ ②배점 배점항목	공급에서 낙첨 총배점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배점기준 기준 4명 이상 3명	HA 경쟁하 점수 40 35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경 ■ ②배점 배점항목	종급에서 낙첨· 총배점 100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배점기준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사시 경쟁하 점수 40 35 25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비고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경 ■ ②배점 배점항목 계 미성년 자녀수(1)	총배점 100 40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배점기준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3명 이상	사시 경쟁하 점수 40 35 25 15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경 ■ ②배점 배점항목	종급에서 낙첨· 총배점 100	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다 배점기준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사시 경쟁하 점수 40 35 25	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비고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해당 시·도 거주기간(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에는 영국자,목글자자자 기반이고, 모든 고,목글자자고 기반이네, 무고원의 영구 자살이가만만 안재 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 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가족관기	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	우 자녀기	·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주민등	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	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 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_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9.2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не	소득금액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 , , , ,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역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丁当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등재된 * 「초지법」 소재지외 * 공부상 「 * 종중소유 경우로서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나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너 네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당첨자		35	0명	5	4명	25				
선정방법			1명	10	5명	30				
	②부양가족수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 01 1 - 1 -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2 + 3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	-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내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지역발·면적별 에치금액 이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세대주일 것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어,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청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라,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가는 성무 발한 보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가 보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 ①소득구분 단계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소득구분		내용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001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 CL74	ᄎᅒᄁ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앙)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9.2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고 ᄎ ㅁ	건축물 종류	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F I 기 기					

5 일반·	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	25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가능 - 세대주일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청약통장 자격요건	구 분	특별	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1,722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가점제: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1순위 추첨제: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2순위: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선정방법	구분		가점	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 이하		40%		60%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		70%		30%		
	전용면적 85m' 초과 80% 2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ниоть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	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구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6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	또는 영주증을 말함)
	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 청약신청 단계에 서비스입니다.	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청약도움e')	- 서비스 이용은 선	· [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이용방법 : 청약신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공고일 다음날부	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공고단지	세대원의 청약자	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연습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청약홈	- 조회기간 : 2024.10.18.(금) ~ 2024.10.27(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당첨자발표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4.10.1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자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2024.10.23.(수) ~ 10.27.(일)	• 당사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6번지	• 사전방문예약제
	(10:00 ~ 16:00)	☎ 02)577-4301	- 당사 홈페이지
예비입주자	제출 대상 세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https://dh-daechi.co.kr)
(예비 순번 앞순위 우선)	별도 안내 예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9.26) 이후 발급분으로 하기 구비 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하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침			ነጠ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단, 해외건설 근로자 특별공급 대상자 필수 제출
	0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공통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인 경우 생략 가능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이하 같음)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로자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0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포함'으로 발급)
다자녀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또는	
		0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보인 모든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확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대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0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 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보급기관, 보이즈 및 등 교계에 보고 기업
				ᆸᇬᇚ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0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0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1 00 3 44 C (CM 4 D)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0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특별공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마이네 미마. 이즈TIT지고그이 기즈 게스쉬어 아이 ★그번에 케이에 베르 즈이 건이에도 H이번즈에나 팬이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고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고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0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확인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내역을 포함하여 발급/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 증빙서류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0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생애최초 특별 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당첨자의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등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국내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7208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분리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0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확인서(본 모집공고 자산보유기준 참고)
제3자	0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제3사 대리인	0		인감도장	당첨자	
네니건 신청시	0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서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부적격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받은 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② 해당 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의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 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보형	<u></u> 럭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근로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금년도 신규 취업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 사기 스트9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인즈자마지고고 이 현재 그리자 및 자연연자가 아니 자리서 저녁도 또는 단체역도에 스트(그리 또는 사업스트 등)이 있는 경우에		① 접수장소 (견본주택)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①,② 세무서 ③,④ 해당 직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②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③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④ 공동(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주택 등)인 경우] ⑥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 서울특별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특별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위택스(www.wetax.go.kr) ②, ③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정부24 (www.iros.go.kr / www.gov.kr) ④, ⑤ 행정복지센터 ⑥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 특별공급에	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서루	루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서약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0		조미드르고드ㅂ(저게 고향)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참고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공통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직계존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하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0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록대조일: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기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기족에서 제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청약한 경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로자 (TANE 19)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된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제출 대상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0		인감도장	당첨자	
0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0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차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당첨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시분증, 인장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인감증명서 당첨자 ○ 인감도장 당첨자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해당 조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

8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간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4년 10월 29일(화) ~ 10월 31일(목) 10:00 ~ 16:00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6번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증빙자료 제출)
공통서류	0		수입인지(인지세)	본인	 수입인지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아파트 공급계약: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 발코니확장 계약: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각각 100% 납부 수입인지 구입처> 오프라인: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0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증명서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계약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제3자	0		인감도장	당첨자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서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직계존비속 포함)
- 부적격 토ㅂ르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를 받은 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압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PC 및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 한 은 행	5621-6258-840362	대치동구마을제3지구주택재건축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				

-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에는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3동 1501호 홍길동 → '01031501홍길동')
- ※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092785, 예금주 : 대치동구마을제3지구주택재건축)로 관리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을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가능시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

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 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알선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과 중도금 대출 주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관 수수료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제반 경비와는 별도이며, 적격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개인의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기간 내 실입주일 또는 입주기간의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와 대출취급기관과 체결한 별도 계약의 일정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님)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기타 계약자 안내

9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 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함
 -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번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_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 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 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주택법」제48조의2 및「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피트니스 1, GX룸 1, 스크린테니스 1, 스크린야구 1, 농구연습실 1, 골프연습장 1, 스크린골프 1, 독서실 2, 북카페 1, 경로당 1, 관리사무소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3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4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 「주택법」제57조 제7항에 따라 공사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금액으로 상한금액 이하로 확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항목	1.택지비	2. 직접 공사비	3.간접 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비용	합계
금액	107,302,638,961원	15,462,979,990원	2,606,933,375원	431,029,335원	657,642,100원	1,391,245,774원	9,222,020,806원	137,074,490,341원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산정

구분		금액	산출근거(인정/불인정/조정 中 택1)
	합 계	22,016,864,971원	
	말뚝박기 공사비	742,094,520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암석지반공사비	562,814,497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2,146,148,006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FHT171ALUI	방음벽 공사비	71,519,291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가산비 -	간선시설 및 도시공원 설치비용	7,891,512,964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장물 철거비용	1,167,894,420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감정평가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	384,992,300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정비사업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	2,220,802,767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택지와 관련된 필요적 비용	6,829,086,206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합 계	9,222,020,806원	
	구조형식	729,809,225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특수형태 가산비	386,002,890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424,084,932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사업승인 조건부	3,520,701,929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건축기인비 ·	인텔리전트 설비	3,235,801,488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분양보증 수수료	135,308,660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361,324,148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지하주차장 층고상향	55,033,767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법령, 조례 등의 재정 또는 개정 등	373,953,767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액 조정

■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5항)

구분	감정기관	감정금액	평균	
감정평가 금액	㈜가온감정평가법인	371,369,510,000원	- 372,925,527,500원	
	㈜정일감정평가법인	374,481,545,000원	572,925,327,300편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토목 / 기계	소방 / 정보통신	전기
회사명	㈜청화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	㈜인곡엔지니어링	㈜인곡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195,851,900원	198,000,000원	195,800,000원

■ 시행자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자	시공회사명	
상호명	대치동구마을제3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3(대치동, 6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법인등록 번호	법인등록 번호 110171-0079217 110111-0007909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4-101-0003600호	109,659,5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아파트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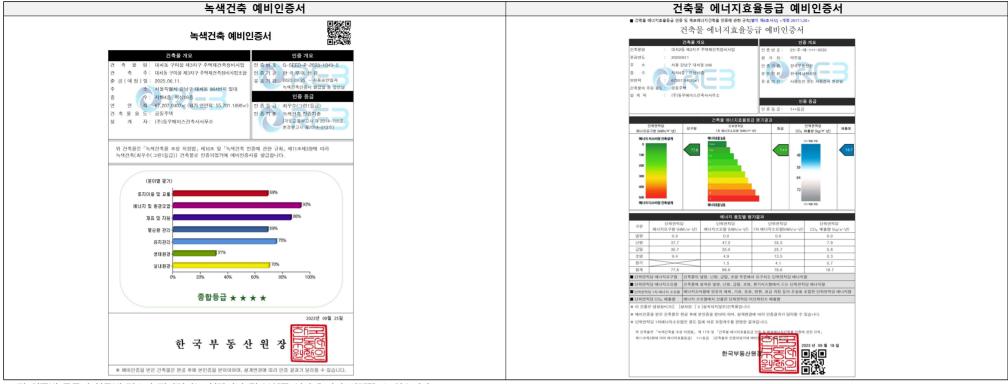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하자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동등 수준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저기보므 서게기즈/제2층\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 2020.10.27.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 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 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10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1) 타입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다입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일
59A	17,778,000	1,777,800	1,777,800	14,222,400
59B	20,381,000	2,038,100	2,038,100	16,304,800
59D	16,664,000	1,666,400	1,666,400	13,331,200
59E	12,431,000	1,243,100	1,243,100	9,944,800
72TA	9,540,000	954,000	954,000	7,632,000
72TB	9,540,000	954,000	954,000	7,632,000
72TC	10,252,000	1,025,200	1,025,200	8,201,600
72TD	10,244,000	1,024,400	1,024,400	8,195,200
72TE	9,604,000	960,400	960,400	7,683,200
72TF	9,605,000	960,500	960,500	7,684,000
72TG	9,604,000	960,400	960,400	7,683,200
84B	18,178,000	1,817,800	1,817,800	14,542,400
94TE	10,277,000	1,027,700	1,027,700	8,221,600
94TF	10,277,000	1,027,700	1,027,700	8,221,6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부분적인 확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동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품질(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경우, 공정 완료사항을 고려하여 비확장형 세대 선택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공간과 비확장 공간의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펜트타입 하부세대는 거실 천장 내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 위탁자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 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 위탁자와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 한 은 행	5621-6738-870016	현대건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						

- 발코니 확장 대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410825, 현대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102동503호 홍길동 →01020503홍길동)(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발코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_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24.12.10	잔금(80%) 입주지정일
부분설		ᅕᆝᄉᆝᇸᅠᄀᆚᄉᆝᅟᅠᄀᆌᇫᄼ	59 전타입	3,850,000	385,000	385,000	3,080,000
	ᆸᆸᄸᅱ	침실1, 거실 _ 2개소	72T 전타입	4,070,000	407,000	407,000	3,256,000
	구군걸시	침실1, 거실, 주방 _ 3개소	84B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94T 전타입	6,270,000	627,000	627,000	5,016,000
시스템에어컨	전실설치 -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_4개소 - 전실설치 -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_5개소 -	59 전타입	7,260,000	726,000	726,000	5,808,000
			72T 전타입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84B	9,460,000	946,000	946,000	7,568,000
			94T 전타입	9,900,000	990,000	990,000	7,92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해지)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세대에 한하여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현재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는 LG이나 향후 제조사 및 브랜드가 바뀔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1(안방 벽걸이형)에 각 1개소 골조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이외의 실에는 골조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 유상옵션 미선택시 홈넷과 연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등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시공여건에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장비 동작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설치 개소 및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LG전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가전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古书	니 다 다 	0004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일
BI냉장고 패키지 (냉장/냉동/김치냉장고)	LG 오브제(미스트베이지)	전타입	6,080,000	608,000	608,000	4,864,000
고그 이터셔	LG 오브제, 플렉스X(BEI3WWQLBI)	전타입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디트리쉬(DPI2572WK)	전타입	1,850,000	185,000	185,000	1,480,000
기능성 오븐	디트리쉬(DKC7340W)	전타입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디트리쉬(DVH1323J)	전타입	1,880,000	188,000	188,000	1,504,000

※ 상기 가전옵션은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 및 스펙,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ſ	■ 추가 선택 품목 - 가구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l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타입		7770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품목			공급금액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일
		59A	9,010,000	901,000	901,000	7,208,000
		59B	6,990,000	699,000	699,000	5,592,000
		59D	6,730,000	673,000	673,000	5,384,000
		59E	8,550,000	855,000	855,000	6,840,000
		72TA	7,920,000	792,000	792,000	6,336,000
주방가구 고급화		72TB	7,610,000	761,000	761,000	6,088,000
[국산가구(리바트) 상부장 유리도어(여닫이)		72TC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상부장 하부조명		72TD	9,720,000	972,000	972,000	7,776,000
+하부장 찬넬조명 +상판/벽(외산 세라믹타일)		72TE	8,690,000	869,000	869,000	6,952,000
+성진/릭(되선 제다릭다릴) +싱크수전(콜러)]		72TF	9,180,000	918,000	918,000	7,344,000
· · · · ·		72TG	8,150,000	815,000	815,000	6,520,000
	0.45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 미선택	10,370,000	1,037,000	1,037,000	8,296,000
	84B	식탁 일체형 아일랜드 추가선택	14,350,000	1,435,000	1,435,000	11,480,000
	94TE		9,180,000	918,000	918,000	7,344,000
	94TF		9,070,000	907,000	907,000	7,256,000
	59A		4,840,000	484,000	484,000	3,872,000
	59B		3,680,000	368,000	368,000	2,944,000
		59D	3,680,000	368,000	368,000	2,944,000
		59E	3,580,000	358,000	358,000	2,864,000
		72TA	3,490,000	349,000	349,000	2,792,000
침실 1 시스템 선반 고급화		72TB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착색바)		72TC	2,560,000	256,000	256,000	2,048,000
+천정형 빌트인 제습기(조명,		72TD	3,490,000	349,000	349,000	2,792,000
서랍장 및 전신은경 포함)]		72TE	6,680,000	668,000	668,000	5,344,000
		72TF	4,240,000	424,000	424,000	3,392,000
		72TG	6,440,000	644,000	644,000	5,152,000
		84B	2,870,000	287,000	287,000	2,296,000
		94TE	3,560,000	356,000	356,000	2,848,000
		94TF	3,640,000	364,000	364,000	2,912,000

■ 주가 선택	품목 -	바닥재	유상옵션
---------	------	-----	------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u> </u>	18	0807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일
	59A	8,500,000	850,000	850,000	6,800,000
	59B	8,120,000	812,000	812,000	6,496,000
	59D	8,190,000	819,000	819,000	6,552,000
	59E	8,750,000	875,000	875,000	7,000,000
	72TA	10,170,000	1,017,000	1,017,000	8,136,000
	72TB	10,240,000	1,024,000	1,024,000	8,192,000
바닥재 고급화	72TC	9,730,000	973,000	973,000	7,784,000
[강마루→원목마루]	72TD	9,390,000	939,000	939,000	7,512,000
	72TE	8,480,000	848,000	848,000	6,784,000
	72TF	9,530,000	953,000	953,000	7,624,000
	72TG	9,920,000	992,000	992,000	7,936,000
	84B	12,800,000	1,280,000	1,280,000	10,240,000
	94TE	12,810,000	1,281,000	1,281,000	10,248,000
	94TF	12,860,000	1,286,000	1,286,000	10,288,000

■ 추가 선택 품목 - 현관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T T T	니	0 H D F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일
	59A	3,220,000	322,000	322,000	2,576,000
	59B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59D	3,630,000	363,000	363,000	2,904,000
	59E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72TA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72TB	3,470,000	347,000	347,000	2,776,000
현관 고급화 [중문+외산타일(바닥)	72TC	4,410,000	441,000	441,000	3,528,000
(중군구되건되글(미국) +시트판넬+신발장 하부조명]	72TD	4,390,000	439,000	439,000	3,512,000
	72TE	3,150,000	315,000	315,000	2,520,000
	72TF	3,140,000	314,000	314,000	2,512,000
	72TG	3,190,000	319,000	319,000	2,552,000
	84B	3,450,000	345,000	345,000	2,760,000
	94TE	3,330,000	333,000	333,000	2,664,000
	94TF	4,250,000	425,000	425,000	3,400,000

선택 품목 - 기타 유상옵션			레아그(400)	XEJ (1000)	(단위 : 원, 부가가치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3 1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역
	59A	4,960,000	496,000	496,000	3,968,000
	59B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59D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59E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72TA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72TB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거실 아트월	72TC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포세린타일 → 세라믹 타일)	72TD	5,440,000	544,000	544,000	4,352,000
	72TE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72TF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72TG	4,180,000	418,000	418,000	3,344,000
	84B	4,560,000	456,000	456,000	3,648,000
	94TE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94TF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59A	9,220,000	922,000	922,000	7,376,000
	59B	13,880,000	1,388,000	1,388,000	11,104,00
	59D	15,030,000	1,503,000	1,503,000	12,024,00
	59E	13,670,000	1,367,000	1,367,000	10,936,00
	72TA	21,190,000	2,119,000	2,119,000	16,952,00
	72TB	21,570,000	2,157,000	2,157,000	17,256,00
거실 뒷벽+복도면(일부타입 주방벽)	72TC	13,410,000	1,341,000	1,341,000	10,728,00
(벽지 → 세라믹 타일)	72TD	17,180,000	1,718,000	1,718,000	13,744,00
	72TE	14,220,000	1,422,000	1,422,000	11,376,00
	72TF	10,770,000	1,077,000	1,077,000	8,616,000
	72TG	17,970,000	1,797,000	1,797,000	14,376,00
	84B	17,180,000	1,718,000	1,718,000	13,744,00
	94TE	14,070,000	1,407,000	1,407,000	11,256,00
	94TF	13,110,000	1,311,000	1,311,000	10,488,00
욕실 고급화 1급 수전류 및 세면기(콜러)+비데일체형 양변기(대림)+부부욕실 컬러 샤워부스]	전타입	5,520,000	552,000	552,000	4,416,000
H-BELL	전타입	210,000	21,000	21,000	168,000

■ 추가 선택 품목 - 조명 유상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9.6	0 8 1	계약시	2024.12.10	입주지정일
		59A	5,090,000	509,000	509,000	4,072,000
		59B	4,710,000	471,000	471,000	3,768,000
		59D	4,710,000	471,000	471,000	3,768,000
		59E	5,090,000	509,000	509,000	4,072,000
		72TA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72TB	3,780,000	378,000	378,000	3,024,000
		72TC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조명 고급화		72TD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72TE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72TF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72TG	6,090,000	609,000	609,000	4,872,000
		84B	4,940,000	494,000	494,000	3,952,000
		94TE	6,090,000	609,000	609,000	4,872,000
		94TF	6,090,000	609,000	609,000	4,872,000
	침실1 특화조명	전타입	980,000	98,000	98,000	784,000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은 천장 길이에 따라, 조명이 분절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구분	구분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납부계좌	신 한 은 행	5621-6258-841863	현대건설㈜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공급계약서에 명기)		

-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상기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신한은행, 140-014-092828, 현대건설(주))로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옵션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503호 홍길동 →0101503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 선택 시 거실 기본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1 특화조명 선택 시 침실1 기본 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기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 현관/발코니/다용도실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걸레받이, 현관디딤판, 현관마루귀틀, 발코니/다용도실 재료분리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천장재	벽지(초배 포함), 벽체 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신발장, 드레스룸 도어, 거실 아트월 타일,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정인테리어 마감재	시멘트벽돌 벽체(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마감, 발코니벽체 CRC보드, GAS 배관, 천정틀 및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감지기), 설비배관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욕실	천정재(천정틀 포함),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위생기구류 (양변기, 세면기, 욕조, 기타 악세서리류 등), 수전류, 욕실환기휀, 젠다이상부 석재	시멘트벽돌, 벽체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주방가구(주방상판, 냉장고장 등, 싱크볼 및 악세서리 포함), 주방가구류(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스마트 거치대 등), 수전류, 주방벽 타일 (타일붙임 몰탈 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일반가구, 시스템가구	신발장, 안방화장대, 드레스룸 시스템가구(스페이스월 포함), 팬트리, 시스템선반	-
도어	목재·플라스틱문틀(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포함), 창호철물 일체(도어록, 도어레버), 가구도어 (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등), 현관 디지털도어록	세대 현관방화문(문짝 포함), 실외기실 출입문(문짝 포함), PL창호(유리 포함), 실외기실 루버
창호 및 기타사항	발코니 수전류	설비배관, 거실월패드, 외부 발코니난간대, 하향식피난구,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

■ 마이너스 옵션 금액

주택형	59A	59B	59D	59E	72TA	72TB	72TC
마이너스 옵션 금액	26,371,000원	27,518,000원	27,171,000원	25,762,000원	30,809,000원	30,861,000원	31,222,000원
주택형	72TD	72TE	72TF	72TG	84B	94TE	94TF
마이너스 옵션 금액	31,459,000원	31,089,000원	30,928,000원	31,205,000원	33,759,000원	38,252,000원	38,607,000원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 옵션 선택의 해당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외부창호는 확장형으로 반영됨으로 발코니확장 공사는 기본형으로 선택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코니확장비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창호를 포함한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더라도 기본제공 품목은 확장평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 에 관한 규칙」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11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통	유의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건축법」,「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앙)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앙)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전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특기 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주체") 또는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주체")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용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양시점에 따라 옵션 계약 시점 등이 세대 내부 공사 기간 이후 진행 될 경우, 부득이하게 옵션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사업지 및 주변 현황	 분용사람에 따라 답은 제국 사람 용에 제대 대구 용사 가는 이후 단형 를 당구, 구독이어가 답은를 단독이자 옷을 무 있는 담이 들장을 두 있다. 이를 확한 후 계곡에야 한다. 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청의 인·허가를 특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발내용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대현초등학교 배치 가능, 중학생은 2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단,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소공원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이는 옹벽(콘크리트, 산벽, 석재, 보강토, 문양거푸집 등)으로 계획되어 지며, 계단, 램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 (인접 _APT단지, 인접 주택단지 (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종교시설 (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외부도로 등) 에 의한 사항 및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 (도시계획 시설 포함) 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본 아파트는 공정완료사항을 고려하여 비확장형 세대 선택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층/타입은 단위세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지하철, 공원 등) 및 인접 대지 현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의 노출범위, 계단/램프의 종류,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장식물 및 문주의 형태/높이/구조/마감/기둥의 위치/크기/개소 등은 구조계산, 현장여건,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위치 및 범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단지 주변 현황, 주변 견본주택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상의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 및 이미지는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단지모형 상 전체 조합세대인 125A 타입의 거실창 중 작은창은 1.2mX1.25m로 시공예정(모형 상 1.2mX2.25m)이므로, 이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녹지,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 등을 침해 받을 수도 있음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단지 공용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실시공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건축물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방음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천창(Top Light), 썬큰, 자전거보관소, 실외기, 상가, 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놀이터 포함)의 배치, 크기, 수량 및 형태 등의 계획은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및 정차구간, 지상 및 옥상층의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은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패널, 안테나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경사지에 위치한 단지 특성상 계단, 경사로 등으로 인해 보행상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세부레벨계획(계단,경사로,옹벽,엘리베이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에 따라 역삼로변 103,104동 주변에는 도로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음팬스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청 협의 결과 및 준공시 실제 도로소음 측정 등으로 인해 소음저감시설의 방식 및 방음벽의 높이, 길이, 위치, 형태, 디자인,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기 성능 저하,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설계변경 시 이의없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정화조/정화조 배기탑/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배기탑/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광패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운동시설 사우나실, 수영장 환기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 (운동시설은 102, 103, 104동 지하1층, 진입층, 1층에 시공예정)
- 배치 상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패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 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3개소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망, 일조, 진동, 소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출입구 인근에 공용홀(지하층 및 1층)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소음발생, 진동발생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테라스 세대의 경우 일부 주변 대지보다 세대가 더 낮아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되는 세대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테라스 세대의 경우 비오톱 등으로 외부 환경조성에 따른 냄새, 해충,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테라스 세대 포함)의 층고는 2,450mm로 적용하며, 기준층 E/V 홀의 층고는 2,350mm이며, 지하층 및 1층 E/V 홀 및 필로티의 층고는 설비 배관 및 전이보, 전이매트의

동별 현황 (공통)

	간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세대의 경우 상부층 실외기실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테라스 세대 인근에 세대창고 및 방재실, 관리사무실 등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소음, 진동발생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에 위치해있는 아름드리 광장에 수변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해충, 소음, 진동, 냄새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지하3층 커뮤니티 외부 출입구에 커뮤니티 시설 급배기 DA가 위치하여 진출입 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 인근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학은 현물 국용에는 대응용 물건물에 용해 물자물 해용하기, 기가 국용 사 하구 세대에 보급, 급세, 보물급, 현용 용에 되면 사용물한 용의 편용한 급에물 본물 수 있음을 학원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에 계획된 테라스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 부분으로, 각 테라스는 연접된 해당세대가 활용 가능하나,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 하여야 하며, 테라스 공간의 등기는 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101동 1,5호세대 후면(101동 동출입구 인근)과 102동 1,2호세대 전면 사이에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1개소(단지 내 3개소)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망, 일조, 진동, 소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세대~주동 출입구 측면에 공용홀(지하층 및 1층)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소음발생, 진동발생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 101동 2~3호 세대 전면부와 108동 1~2호세대 전면부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예정으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F 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발전기실 급, 배기 DA / 101동 1호~2호세대 전면 테라스세대(94TA,94TD) 측부에 주거용 발전기실 급, 배기 DA / 108동 1~2호세대 필로티
	출입구와 101동 3호세대 사이 주차장에 제연급기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사우나실, 수영장 환기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운동시설은 102, 103, 104동 지하1층, 진입층, 1층에 시공예정)
	• 102동 공용부 PD 및 옥상층에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환기 및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5호세대 후면(101동 동출입구 인근)과 102동 1,2호세대 전면 사이에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1개소(단지 내 3개소)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망, 일조, 진동, 소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02동	• 102동 주변의 운동시설 상부에 운동시설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일부세대의 소음발생,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설계변경 시 이의없이 동의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02동 필로티 출입구 옆 자전거보관소 인근에 주차장, 기계실 급기 DA / 102동 1F 125D타입 측면에 운동시설용 DA / 102동 2F 3~5호세대 사이에 아파트 기계실 배기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사우나실, 수영장 환기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운동시설은 102, 103, 104동 지하1층, 진입층, 1층에 시공예정)
	• 103동 출입구 전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쓰레기 옥외투입구 미포함) 설치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한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3동의 경우 운동시설과 1층 진입로가 면해 있어 주동 출입구 동선이 다른 동과 비교하여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거리가 먼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103동	
	• 103동과 104동 사이 운동시설 상부공간에 수영장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덕트가 노출되어 103동 계단실 측부로 연결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소음발생,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03동 운동시설 1F 역삼로 측 전면부에 운동시설 급배기 DA 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사우나실, 수영장 환기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운동시설은 102, 103, 104동 지하1층, 진입층, 1층에 시공예정)
	• 104동 출입구 전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쓰레기 옥외투입구 미포함) 설치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1 _{04동}	• 104동의 경우 운동시설과 1층 진입로가 면해 있어 주동 출입구 동선이 다른 동과 비교하여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거리가 먼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1046	• 103동과 104동 사이 운동시설 상부공간에 수영장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덕트가 노출되어 103동 계단실 측부로 연결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소음발생,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04동 운동시설 1F 역삼로 측 전면부에 운동시설 급배기 DA 5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 105동 1~2호 세대 출입구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음식물 쓰레기 옥외투입구 포함) 설치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2호 세대 후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쓰레기 옥외투입구 미포함) 설치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호세대 측벽(아름드리 광장 인근)에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1개소(단지 내 3개소)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망, 일조, 진동, 소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2호 주동 출입구 측면에 공용홀(지하층 및 1층)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소음발생, 진동발생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1~2호세대 출입구 램프 측면에 제연급기 DA / 105동 3~4호세대 후면에 주차장 제연급기, 배기 DA / 105동 3~4호세대 필로티 외부에 빗물저류조 급기/기계실 배기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72TG 타입의 경우 외부도로보다 테라스가 낮아 사생활 침해 및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테라스단부를 유리난간대(1,2M이상)로 설치할 예정이나, 출입창호 잠금관리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을"의 귀책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06동 72TG 타입의 테라스하우스 측면~운동시설 차량출입구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정차하여 정기적으로 수거예정으로, 냄새, 해충,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106동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6동 출입구 측면 자전거보관소 옆에 제연급기 DA / 106동 72TG 타입 상가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제연배기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3호 세대 출입구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쓰레기 옥외투입구 미포함) 설치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8동 3호세대 전면과 107동 1~2호 동출입구 사이에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1개소(단지 내 3개소)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망, 일조, 진동, 소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호세대 측벽에 옥외 노출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7동 • 107동 1~2호 주동 출입구 측면에 공용홀(지하층 및 1층)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소음발생, 진동발생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72TD.TF타입 및 72TC.TE의 사이에 상가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 및 환경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07동 72TF 타입의 경우 외부도로보다 테라스가 낮아 사생활 침해 및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테라스단부를 유리난간대(1.2M이상)로 설치할 예정이나, 출입창호 작금관리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 "을"의 귀책임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07동 1F 2호세대 후면에 제연급기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3~5호 세대 출입구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음식물 쓰레기 옥외투입구 포함) 설치예정으로 쓰레기 수거장 및 정화조/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8동 3호세대 전면과 107동 1~2호 동출입구 사이에 지하주차장 TOP LIGHT가 1개소(단지 내 3개소)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조망, 일조, 진동, 소음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1동 2~3호 세대 전면부와 108동 1~2호세대 전면부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예정으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측벽에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한 일부세대의 소음발생, 조망권, 일조권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108동 설계변경 시 이의없이 동의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108동 94TF 타입의 인근에 세대창고 및 웰컴라운지가 위치해 있어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08동 94TF 타입의 측하부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8동 94TE.TF 타입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피트니스) 및 급배기D.A가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108동 1F 2호세대 후면에 제연배기 DA / 108동 1~2호세대 필로티 출입구와 101동 3호세대 사이 주차장에 제연급기 DA / 108동 3~5호세대 필로티 출입구 램프 옆에 제연급기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조망, 냄새, 진동 등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실 급배기의 경우, 운영에 따라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연, 분진, 냄새, 진동, 소음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계,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 마감)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특성 및 창호조건 상 이삿짐 차량은 사다리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파라본드로 시공합니다.
- 세대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일부실의 전망강화형 창호에 설치된 유리난간은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리난간이 없는 다른 창호를 이용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부 테라스하우스는 주변레벨보다 낮아 전면에 옹벽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 조망, 일조, 프라이버시, 미관저해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세대 난간은 디자인 특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리난간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세대는 세대별 구조물 및 케노피 유무와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망, 일조 등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 디자인(입면마감재료, 동출입구, 외벽의 줄눈, 돌출패턴, 색채, 측벽, 옥탑장식물, 옥상난간, 몰딩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 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사용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워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세대 전면부 구조물 및 지하3층 램프 상부 구조물 및 테라스세대 난간은 디자인 특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테라스 세대의 경우 테라스의 우수유입 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상부층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상 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식재, 포장, 옥상조경 등), 각종 시설물(DA,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실외기 설치공간 등),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의 외관 디자인 및 조경계획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품특화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 입면디자인, 경관조명, 출입구, 색채, 몰딩, 창호, 옥상장식물, Bl. 식재, 조경계획, 줄눈,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조명설치 위치 등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4a입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여성전용,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주차장 차로의 높이 및 주차장 출입구 높이 기준 지하 3층 2.7M, 지하1층/지하2층/지하4층 2.3M, 주차공간 기준 2.1m 이상)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차량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과 구획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를 시공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고 각 동별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설

주차장

- 부대시설 | 당 단지의 부대복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근린생활 📗 각종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용 환기 및 정화조 배기시설(덕트, 장비 등)이 공용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문주,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안전승하차공간 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아파트 분양과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외부입면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입면, 평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근처에 위치하는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조망, 매연, 일조,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워활한 입주 업무 지워,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도심경관의 역사 문화성 강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본경관계획'의 도심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경관계획 기준으로 당 단지의 운동시설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커뮤니티(휘트니스, 독서실 등)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야 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운동시설은 단지 주민공동시설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시설로 별도의 운영주체가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입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및 각종 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 세대창고는 주차장 구획상 설치위치가 한정되어 각 동별 공용홀로부터 접근성의 형평성 차이가 있으며, 세대창고 내부 위치선정은 "사업주체"가 결정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 및 이용 가능한 택배함의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패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아파트 및 부대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 마감재는 경관/건축위원회심의 등 인허가 사항 범위내에서 계약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혐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연소가스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일부 테라스 세대의 경우 지하외벽과 면해있어 결로, 방습기능이 약화될 수 있어, 기계환기 및 자연환기를 수시로 진행해야 함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시 현관중문 슬라이딩 도어와 만나는 벽체, 천장, 가구 등에 따라 본 공사시 사이즈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및 세탁기실 도어의 경우 사업주체의 지정제품으로 시공하여 제품의 특성상 8.76T 접합유리로 시공되지 않으며, 중문은 각 세대의 적용구조에 따라서 원슬라이딩 단위세대 3연동도어로 설계되었습니다. • 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 본 아파트의 경우, 공정 완료사항을 고려하여 비확장형 세대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우수 등의 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 (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비활장 발코니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단위세대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개방형 발코니의 출입창호에는 스트라이커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크리센트 또는 레버형 잠금장치로 시공될 예정이므로 1~2층 및 최상층, 테라스세대의 발코니(개방형 발코니 포함)의 출입창호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입주자의 귀책임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하여 석재타일로 시공될 예정이며, 드레인 주위 이물질 막힘으로 인한 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우수의 유도를 위하여 노출형 드레인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유리난간대 시공을 위해 내측 폭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철제방화문(현관문, 하향식피난구 출입문, 실외기실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됩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는 및 테라스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충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 세대 및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화재시 대피를 위하여 세대 실외기창을 양개오픈형으로 설치 및 별도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테라스나 발코니에 오배수/우수용/가스 배관, 환기시설물들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공간 제약,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 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 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유리난간 일체형 외부창호는 난간의 반대편 창이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창호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기계양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세라믹타일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 펜트리, 가구 내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관/배선 등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가구 및 마감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 공간이 일부 제한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유상옵션품목인 중문과 가구 및 벽체와의 간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중문은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복도 등 바닥마감재 옵션선택시 바닥에 물기 등이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 중 거실아트월, 주방상판/주방벽체 세라믹타일은 본 공사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위치가 변경될수 있으며 추가분절되어 시공될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 크기 사전확인후 가지고 계신 가전기기 사이즈가 못 들어갈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타일 옵션선택시 거실 아트월, 주방상판, 주방벽체 등에 적용시 자재특성에 따라 본 공사시 패턴불일치, 분절라인 조정 등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그외 철재/PD도어류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과 일반분양 세대간 기본 제공품목이 일부 상이하므로 반드시 청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 옆쪽 천장에 가스 배관이 캡마감되어 일부 노출되어 설치되며, 가스 사용 시,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 분입니다. 또한,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한 하자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면대 사용시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바라며, 세면대 사용 후 가구 등 마감재에 묻어 있는 물 닦기 등 입주자 개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본 시공시 세대 환기구는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크기, 디자인, 위치, 개소가 결정됩니다.
- 일부 평형의 오수, 배수, 우수배관은 층상배관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하부 세대로부터 이어지는 테라스 공간등에 통기용 배관의 노출에 의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 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설비

기계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수전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 및 보이스홈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 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 입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가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내에 세대분전반과 세대단자함이 통합형/분리형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신발장 내부가 협소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시공중에 초고 속통신 인증반영 여부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평형별로 침실 벽 위치로 및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 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 제조사별로 기능이 상이할 수 있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워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될 경우. 전워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Q,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 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고,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세라믹타일의 경우는 에폭시공법 등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천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D100 Pipe) • 온도조절기 디자인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전기 스위치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견본주택과 디자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되는 창호사양 (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충별, 평형별, 충수별, 주동별, 라인별, 침실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환기 장치 설비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냉매배관 총 2개소가 기본제공됩니다.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드레인배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제습 및 배수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인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공사 시행 중 "입주자"의 위 표시재산을 품질관리 등을 위한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샘플하우스 사용 이후 원상복구를 하고 "입주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6

■ 홈페이지 안내 : https://dh-daechi.co.kr

■ 분양문의 : ☎ 02-577-4301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으면,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